

## 日帝下 農村振興運動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目 次>

- I. 問題의 所在
- II. 農村振興運動의 背景
- III. 農村振興運動의 展開
- IV. 農村振興運動의 結果
- V. 総 合

### I. 問題의 所在

1929年 가을 美國에서 爆發된 經濟恐慌은 순식간에 全資本主義世界를 襲來하여 空前의 大世界恐慌으로 發展하였으며 이恐慌은 先進資本主義諸國의 工業恐慌과 植民經濟下에서의 農業恐慌이 連結되어 從前에 그의 類例를 볼 수 없었던 深刻한恐慌으로 그리고 全世界的恐慌으로 發展되어 갔던 것이다.

무릇 日本의 物價는 生糸 및 織糸 等의 主要輸出品을 為始하여 모든 輸出品目이 일제히 急落하고 貿易은 極度로 萎縮되 되었으며 深刻한恐慌의 打擊으로 日本의 工業生產은大幅의 인低下水準을 免할 수 없게 되었고 賃金의 不拂, 勞動者의 大量解雇 等으로 인하여 勞資間의 階級鬪爭이 尖銳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農村에 있어서는 農產物價格의 濟落으로 農家經濟의 破綻을 免할 수 없었다.

이에 日本資本主義는 그들 國內의 危機를 克服하고 資本에 대한 新的 利潤獲得의 길을打開하기 위하여 1931年 드디어 滿洲에 대한 侵略을 改行한 바 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恐慌과 戰爭이라는 세로운局面에 面對한 日本帝國主義는 그 植民地政策에 있어서 重大한 轉換을 맞게 되었던 것이니 그것은 植民地經濟에 대한 收奪 摧取의 強化와 戰時的 強制勞動으로 戰爭利潤을 獲得하고 戰爭을 위하여 軍需資源을 積極的으로 開發하려 함에 着手하였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朝鮮에 대한 日本의 위와 같은 植民地經濟政策實踐은 農村經濟의 窮乏化에 加速的인 條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小作爭議의 深化, 向都離村傾向의 顯著化 그리고 日本·滿洲方面移住者等의 繢出現象을 낳게 하는 契機가 되어 農村經濟는 悲劇的인 慘狀에陷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事態에 直面하여 日帝統治者들이 朝鮮農民과 農村에 대한 救濟事業을 期한다는 名目下에 이른바 自力更生의 標榜下에 農村振興運動을 展開시킨 바 있다.

本稿의 目的은 바로 日帝下에 推進 展開된 農村振興運動의 基本的인 性格을 解明함으로써 農村振興運動에 관한 歷史的 意義를 定立 宪明하려 함에 있다.

## II. 農村振興運動의 背景

植民地經濟下에서의 우리나라의 農業發展段階를 살펴보면 첫째 土地收奪을 基軸으로 하는 本源的 資本蓄積期, 둘째 產米增殖을 中心으로 한 農民支配運動과 小作問題의 本格的展開時期, 세째 農產物價格의 暴落과 雪隣現象의 激化로 特徵지울 수 있는 時期, 네째 農民의 苛酷한 戰時的 負擔時期 等이다.

農村振興運動은 바로 日帝下 韓國農業發展의 第3段階時期인 農產物價格의 大暴落과 雪隣現象의 激化로 特徵지워진 農業恐慌時期 以後에 所屬된다.

이렇게 볼 때 農村振興運動이야말로 農業恐慌과 깊이 聯關을 갖고 推進 展開된 運動이라 할 수 있고 1930年代의 世界恐慌의 餘波가 農民生活의 極端的인 危機를 낳게 되었으며 同時に 1930年の 空前의 大豐作으로 米價의 大暴落을 自招케 되었던 狀況에서 朝鮮의 中小地主 및 自作農의 没落, 小作農의 離散 등 社會的 矛盾이 深刻하게 露出된 가운데서 나타난 運動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朝鮮에 있어서 農家總戶數 290餘萬戶 가운데 그의 約 8割을 占하는 230萬戶의 農家가 小作 및 自作兼小作階級에 屬하는 小細農으로서 이들 農家の 大部分은 每年 端境期에 있어서 食糧不足에 부딪쳐 食糧을 山野에 依存케 하였고 草根木皮로써 간신히 一家口의 糊口之策을 講究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反復되어지는 食糧缺乏과 負債額의 累積과 重壓 때문에 朝鮮農村經濟의 疲弊는 日本의 그것에 比하여 深刻한 狀態에 있었다. 云々」<sup>(1)</sup>과 「農產物價格의 低落은 日本보다 朝鮮이 더욱 激甚하였고 農家收入의 激減은 日本農民보다 더 窮乏되고 抵抗力이 弱한 韓國農民의 破滅과 没落을 一層 더 苛酷하게 하고 있었다. 즉

(1)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の 農業』, 1938, pp. 187-188.

1925年에 11圓 4錢(百斤當)이었던 朝鮮의 糜(벼)價格은 1931년에 이르러 4圓63錢으로 大暴落하고 있었다. 云云」<sup>(2)</sup>

또한 「1926年 粗穀石當의 屬米價格 15.01圓의 水準이 1931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6.61圓으로 大暴落을 보게 되었다. 云云」<sup>(3)</sup> 과 「朝鮮의 米價指數는 1925年 348.2(1910年=100)로부터 1931년의 156.5로 55%의 低落을 보이게 되었고 一般物價指數는 1925년의 237.8(1910年 7月=100)로부터 1931년의 147.5에 이르러 38%의 低落을 나타나게 되었다. 云云」<sup>(4)</sup>에서 穀價의 暴落現象과 農產物價의 低落이 工產物價의 低落現象보다 심한 內容으로 나타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慶尙南道에 있어서 管內 220餘個所의 勸農救濟組合所在部落에 대하여 調查한 結果에 의하면 調查部落戶數 26,161戶中 負債人員은 14,298人으로서 그의 總負債額이 1,528,658圓에 達하고 1人平均 107圓에 該當한다. 每年的 總收入 이 平均 150圓 内外에 不過한 小農의 負債로는 너무나 무거운 것 같다. 云云」<sup>(5)</sup> 또한 「1930年 當時 總督府의 調査에 의한 農家の 負債狀況을 보건대 全農家 約 300萬戶중 借金을 갖고 있는 것은 實로 그의 5割7分인 173萬戶에 達하여 있고 一戶當 平均額이 65圓 最高額은 420圓에 達하여 그것들은 主로 土地購入, 土地改良, 農具購買 等에 對한 借入金을 出發로 하여 生計, 冠婚葬禮, 農糧 等의 經費로부터 奢侈費, 交際費, 子弟教育費, 保證債務의 轉嫁費 또는 農業以外의 事業에서의 失敗 等等各種各樣의 原因에 依하여 漸增된 것이나 그의 總額은 水利組合 負擔金 約 8,900萬圓, 不動產을 摘保로 朝鮮殖產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 等으로부터 融資를 받고 있는 것 約 1億 6,700萬圓 等을 合計하여 4億圓에 達한 것으로 見積되어 졌고 그 가운데 生活債務로 看做되어지는 것이 1億 1百萬圓餘로 算出되는 狀態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農民의 約 80%를 占하는 細農階級은 极히 低位한 生活을 甘受하면서 年年歲歲 食糧不足에 허덕이며 現金의 收支는 年 560圓 乃至 200圓 程度에 不過하는 者가 많은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이 窮境을 脫皮하기 위해서는 根本的인 政治對策을 樹立할 必要에 切迫되어 있었다. 云云」<sup>(6)</sup> 等等에서 貧農의 累積 그리고 細窮民의 頽落相의 一面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韓國農民經濟의 樣相은 1930年の 官製統計에 의한 春窮農家戶數에서 徵表되어 있다. 全國農家總戶數의 約 折半以上이 春窮農家이었으며 특히 小作農에 있어서는 3分의 2以上이 春窮農家이었다는 事實에서 뛰어하고 이를 地域別로 보면 農村의 階層分化가 더

(2) 李基洙,『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第二部 經濟史), 1947, p. 111.

(3) 金俊輔,『農業經濟學序說』,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7, p. 237.

(4) 李基洙,『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第二部 經濟史), 1947, p. 112.

(5) 朝鮮總督府,『朝鮮の經濟事情』, 1931, p. 238.

(6) 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p. 668-669.

속 진전되어 있는 南韓地域에 있어서 그 比重이 크게 나타나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小作農의 4분의 3이 春窮農家로 되어 있었다. 즉 自作農의 一部를 除外한 全農家가 거의 春窮農家의 狀態에 있었다는 데서 明白하다(〈表 1〉 參照)。

〈表 1〉 春窮農家戶數表(1930年)

(單位 : 千戶)

地 域 別	自 作 農		自 作 兼 小 作		小 作 農		合 計	
	戶 數	%	戶 數	%	戶 數	%	戶 數	%
南 韓 七 道	50	22.4	220	40.0	921	72.8	891	55.5
北 韓 六 道	42	14.5	103	32.8	216	61.3	361	36.0
全 國	92	18.4	323	37.5	837	68.1	1,252	48.3

資料：朝鮮總督府, 『朝鮮に於る小作に關する参考事項摘要』, 1932, p. 61.

朝鮮農會의 農家經濟調查結果(1930~1932年)와 日本農民調查結果(1931年)에 의하여 農業經營投下, 農業總收入 그리고 家計費의 比較를 通하여 日帝下의 農村經濟相을 살펴봄으로써當時의 實相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農業經營에 投下된 資本에 있어서는 韓國農家の 投下資本量이 日本農家の 그것에 比하여 約 3分의 1에 不過하며 經營에 의한 農業總收入에 있어서는 韓國農家の 農業總收入이 日本農家の 農業總收入에 대하여 2分의 1 以下이었고 收支不足額도 무려 5倍에 達하여 있어서 韓國農村經濟는 文字 그대로 貧窮과 沈滯 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家計費에 있어서도 教育費, 交際費, 娛樂費, 衛生費 등의 이른바 第2生活費를 보면 日本農家가 總家口費의 37%를 占有하고 있는 데 대하여 韓國農家는 2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絶對額에 있어서도 日本農家の 2分의 1 以下에 不過하였다. 또한 第1生活費중에서 飲食費는 日本農家가 約 42%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韓國農家에 있어서는 總家計費의 60% 以上을 차지하고 있었다(〈表 2〉 參照). <sup>(7)</sup>

그리고 當時의 韓國農村經濟의 貧困相은 農家經濟의 收支上에 뚜렷이 나타나 있었거니와 2町 4反步를 耕作하는 韓國農家와 1町 2反步를 耕作하는 日本農家の 对比에 따른 農家收支均衡을 살펴보면 日本農家の 收支不足額이 9圓인데 反하여 韓國農家の 그것은 45圓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韓國의 中農家層이 日本의 小農家層보다도 더 低劣한 生活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뚜렷하다(〈表 3〉 參照).

위와 같은 事態에 直面하여 日帝統治者들은 1932年以來 朝鮮農民에 대한 救濟計劃을樹立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即時 1932年에 經濟更生計劃<sup>(8)</sup>을樹立한 바 있고 이어 同年에 自

(7) 久間健一, 『朝鮮農政の課題』, 1943, pp. 424-427.

(8) 經濟更生計劃이란 5個年計劃으로 細農 230萬戶를 對象으로 所謂 自力更生의 標榜下에 不足食糧의 充實과 負債整理 그리고 現金收支均衡을 圖謀한다는 目的下에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表 2〉韓日農家의 家計費比較

項 目	區 分	韓 國		日 本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第一生活費	住 居 費	10.14(圓)	2.3(%)	20.35(圓)	3.7(%)
	飲 食 費	268.50	60.7	232.83	42.4
	被 服 費	26.37	6.0	42.97	7.8
	光 熱 費	39.02	8.8	33.20	6.1
	什 器 費	5.07	1.1	14.39	2.6
	小 計	349.15	78.9	343.74	62.6
第二生活費	修 養 費	0.26	0.1	6.54	1.2
	教 育 費	15.01	3.4	8.76	1.6
	交 際 費	23.26	5.3	49.86	8.5
	嗜 好 費	8.53	1.9	27.23	5.0
	娛 樂 費	0.88	0.2	3.78	0.7
	衛 生 費	6.24	1.4	31.26	5.7
冠 婚 葬 禮 費	禮 費	23.11	5.2	35.49	6.5
	其 他	16.22	3.6	45.39	8.2
	小 計	93.51	21.1	205.31	37.4
總 計		442.06	100.0	549.05	
一 人 當 經 費		68.20		86.05	100.0

資料：久間健一，『朝鮮農政の課題』，1943，p. 426。

〈表 3〉韓國과 日本農家經濟의 收支比較

區 分	韓 國	日 本
總 農 業	收 入	778.36(圓)
兼 家 業	總 收 入	707.60
家 事	總 收 入	70.76
總 經 營	收 入	349.92
經 營	營 費	334.22
兼 業	費	15.70
總 農 業	所 得 (A)	428.44
兼 家 業	所 得	373.38
家 事	所 得	55.06
計	費 (B)	473.25
A	B	-44.81

資料：久間健一，『朝鮮農政の課題』，1943，p. 425。

작農創定計劃<sup>(9)</sup>을樹立하게 된 바 있었으며 農村振興運動의 重點은 바로 1932年부터 實施

(9) 自作農創定計劃이란 農村經濟更生의 實績을 舉揚코자 目的을 두고樹立된 計劃을 말하며

된 自作農創定計劃에 비롯되어 實踐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III. 農村振興運動의 展開

日帝 植民地收奪時期인 1930年~1945年은 宇垣南, 小磯阿郎 等이 總督으로 있었던 時期이나 宇垣이 統治하였던 1931年~1936年的 時期 즉 滿洲侵略開始로부터 中國本土侵略開始直前까지는 恐慌에 따른 負擔을 農民에게 轉嫁하였던 時期이 있고 南總督以後의 時期는 戰爭에 따른 負擔을 農民에게 轉嫁시키는 時期에 該當되는 때였다.

農村振興運動은 바로 宇垣總督時代에 農業恐慌의 影響에 따른 穀價의 大暴落과 이의 影響 속에서의 農村經濟 특히 小農經濟의 形言할 수 없는 困窮實相에 따른 救濟打開의 手段으로 推進展開된 運動이나 이의 展開는 第一期工作時期와 第二期工作時期로 分類區分하여 그의 性格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 1. 第一期下 農村振興運動의 展開

農村振興運動은 自力更生과 振興對策과의 兩面의 目的下에 自力更生의 경우는 農家自身의 奮鬥努力에 依해서 物心兩面에서當時의 脫境을 脱皮解 하려 하는데 있었고 振興對策은 自力更生을 助成하기 위하여 그들이 刺戟을 주며 또는 生活改善에 寄與하기 위하여 各種各樣의 施設을 行함을 말하는 것이다 第一期는 바로 農村振興運動의 準備工作으로서 1932年 7月에 道知事會議를 開催하여 當該運動의 趣旨를 示達하고 이어 朝鮮總督府에 農村振興委員會를 設置하여 農村振興運動의 中樞機關化<sup>(10)</sup>하고 다음과 같은 運動方針<sup>(11)</sup>을 示達 實踐하는 時期에 該當되는 때이다.

그리고 이에 農村振興運動의 重點的인 事業內容이 되어 있었던 自作農創設事業을 理解함에 있어서 必須的인 前提가 되어 있는 自作農地設定實施要領에 關한 内容을 살펴보면 다음

그것은 自作農의 減少를 防止하며 兼하여 農村思想의 善導를 期하고자 함에서 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10)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8, p. 718.

(11) 運動方針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從來의 農村施設은 生產方面에 偏重하여 精神的修養이 疎外되어서 農村振興上 造成이 많았기 때문에 今後는 勤勞精神의 함양에 力點을 두도록 한다.
- ② 從來는 農村部門이 各方面에 分化되어 施設의 完璧을 期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今後는 委員會를 中心으로 施設事項의 連絡統制를 圖謀도록 한다.
- ③ 各施設의 實施에 當하여 그 案件을 委員會에 附議하여 審議토록 한다.
- ④ 道·郡·邑·面에는 委員會를 設置하여 關係官吏는 勿論地方有識者를 參與시켜 今後는 이들 委員들을 中心으로 一大統制下에 農村振興을 圖謀토록 한다.
- ⑤ 委員會外에 實際 農村指導의 中心部落이 存在하고 있는部落은 이를 指導部落으로 指定하여 委員會와 連絡을 取하여 農村指導의 實績을 舉揚토록 한다.
- ⑥ 山崎進吉을 비롯하여 그밖에 講師를 招聘하여 各地에서 農村振興의 講演會를 開催토록 한다.

과 같다.

(1) 自作農者는 農村의 中堅人物로서의 素質을 갖추어야 하고 志操堅實하고 더욱 勤勞好愛精神에 불타있고 現在의 小作農業者(自作兼小作農을 包含)이어야 하며 農業에 대한 知識 또는 經驗을 가지고 購入農地를 스스로 耕作할 目的下에 새로운 農業者로서의 透徹한 精神을 堅持하여야 하며 自作地를 設定하려 하는 農地는 當該農業者가 現在 小作하고 있는 土地 이어야 함을 原則으로 하며 他人의 小作土地의 경우는 그들의 同意를 얻은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새로이 開墾干拓하여 하는 土地로서 스스로 耕作코자 하는 土地에 대하여 設定을 認定하고 어느 것이든 旱水害의 念慮가 없는 土地條件임을 要한다.

(2) 農地購入資金에 대하여서는 1932年度 所要資金은 道地方費에 대하여 1933年 3月 1日에 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에서 融通하며 1933年度 以後의 資金은 每年 12月 1일까지 入手토록 한다. 그의 債還은 1932年度分은 1934年 3月 1일에 그 元利均等年賦償還條件으로 1946年까지 債還完了토록 하며 1933年度 以後分은 1個年 据置 24個年的 元利均等年賦償還條件으로 한다. 自作農家에 대하여서는 年利率 3分 5厘로써 道地方費가 直接 이를 貸付토록 한다.

(3) 自作農家에 대한 資金의 貸付條件은 一戶當 購入되어질 農地를 畚 4反步, 田 1反步를 標準으로 하여 그의 金額은 平均 660圓으로 하고 1千圓을 超過할 수 없도록 하며 土地價格算出基礎는 畚田 共히 收穫量의 5割을 小作科로서 納付케 하며 粮(벼) 1石의 時價를 10圓으로 假定하여 小作糧 1石에 대하여 地價 100圓이란 計算인 것이나 그의 實施에 있어서는 道知事が 適宜하게 이를 量定하도록 한다. 어느 것이나 이 資金은 農地購入價格金額에 대하여 貸付하며 道地方費는 이에 대한 擔保로서 第一抵當權의 設定을 하도록 한다. 土地購入資金의 支拂方法은 郡島農會長 또는 農會分區長 等이 借入金의 受領 및 返還 그리고 土地購入代金의 支拂方法에 관하여 自作農이 되는 者로부터 委任을 받아서 이를 處理하며 이의 債還은 대체로 앞의 債還方法에 準한다.

(4) 總督府는 道地方費의 自作農地設定事業을 다음의 方法에 依하여 助成한다.

① 1932年度 設定분에 대하여서는 道地方費가 一括 借入金을 行한 날로부터 1933年 3月 1일까지의 金利에 대하여 年利 3分의 比率로 補助金을 交付토록 하며 1933年度 以後분에 대하여서는 据置期間 1個年的 金利에 대하여 年 3分의 比率로써 計算한 金額을 또 年賦償還期間中은 年利 6分 5厘로 計算한 元利均等償還年額으로부터 年利 3分 5厘로 計算한 元利均等償還年額을 控除한 金額을 補助한다.

② 不動產取得稅 및 所有權移轉 等의 登錄稅는 特히 이를 免除할 方針이다.

(5) 自作農設定後에 있어서는 地方에 適應되는 合理的 農業을 經營케 하며 道郡各級農會

의 各種產業職員으로 하여금 指導에 臨하도록 하며 나아가서 當該 自作農地를 基礎로 하여 地方農業改良을 促求하여 農村振興을 圖謀한다는 意圖下에 臨하게 한다.

(6) 不在地主에 대한 土地分讓勸誘方法으로서 京城에서의 在住者에 대하여서는 依賴要請形式에 依해서 總督府 또는 農會가 取扱토록 하며 地方에서의 在住者에 대하여서는 各道에서 取扱토록 한다는 等等이었다.

## 2. 第二期下 農村振興運動의 展開

第二期의 農村振興運動展開時期는 1933年 3月 政務總監이 發한 農家經濟更生計劃에 關한 件의 通牒<sup>(12)</sup>에 依據하여 農村振興運動이 本格的으로 突然 實施된 時期에 該當되는 것이 고 이 通牒에 依해서 農家更生計劃樹立의 方針과 計劃實施要綱을 確定하여 施行한 時期이다.

이에 農家經濟更生計劃施行에 對한 大要 즉 根本的 趣旨<sup>(13)</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物質에 偏重하거나 形式에 흐르지 말고 精神의 振作, 農民의 自覺・自發에 重點을 두도록 한다. 둘째 各道는 眇內 各邑面마다 每年 1乃至 數個部落을 選定하여 部落內 各戶마다 現況調查를 行하고 이를 基礎로 하여 5個年마다 物心兩面에 걸친 農家更生計劃을 樹立 實行케 한다. 세째 計劃의 目標로서는 各農家の 不足食糧의 充實을 期하여 春窮을 啓도록 하고 現金收支均衡을 保持함과 同時に 負債를 整理 償還케 하여 그의 重壓으로부터 救出되도록 한다. 네째 公私各機關 및 官公民各方面의 人士들을 總動員하여 指導에 當하게 하며 政府의 物質的 補助와 같은 것은 農民의 自覺과 更生計劃의 進行에 隨伴하여 逐次의 으로 그의 必要程度에 應하여 實施토록 한다는 것 等等이었다.

農家經濟更生計劃施行에 대한 위의 根本的 趣旨 가운데 세째 計劃의 目標로서의 各農家の 不足食糧의 充實을 期하여 春窮을 啓도록 하고 現金收支均衡을 保持함과 同時に 負債를 整理 償還케 하여 그의 重壓으로부터 救出케 한다는 所謂 更生三目標에 따른 農家更生計劃에 關한 內容을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이렇듯 農林振興運動展開의 重要한 一環이었던 農家更生計劃은 農家窮乏의 共通的인 最大病의 要素인 ① 不足食糧의 充實을 圖謀하며 ② 負債整理하여 그의 重壓으로부터 冒免케 하고 ③ 現金收支均衡을 圖謀코자 함에 目的을 두고 推進 展開된 바 있었거니와 農家更生計劃의 實行方法<sup>(14)</sup>은 다음에 依據하여 展開되고 있었던 것이다.

(12)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1939, p. 564.

(13)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p. 674.

(14)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の農業』, 1938, pp. 222-223.

〈表 4〉 農家更生三目標達成計劃

年 度	食糧不足			負 債			現金收支不均衡			
	戶 數	數 量	戶 當	戶 數	金 額	戶 當	戶 數	收 入 額	支 出 額	控 除 不 足 額
1933	戶 25,919	石 61,286	石 2.36	戶 35,960	圓 4,440,209	圓 123.48	戶 24,270	圓 125.54	圓 151.31	圓 25.77
1934	戶 32,135	石 76,521	石 2.38	戶 44,062	圓 4,986,558	圓 113.17	戶 28,865	圓 143.71	圓 170.65	圓 26.94
1935	戶 44,955	石 108,984	石 2.42	戶 59,357	圓 6,192,146	圓 104.32	戶 38,816	圓 135.42	圓 162.40	圓 26.98
1936	戶 74,236	石 176,847	石 2.38	戶 95,619	圓 10,187,080	圓 106.54	戶 58,638	圓 144.19	圓 174.90	圓 30.71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の農業』，1938，pp. 228-229。

첫째 計劃은 農家個個의 經濟更生의 具體的 方案을 明示함과 同時に 그 精神的 意義를 充分히 阐明하도록 한다. 둘째 計劃은 各戶所在勞動力의 完全한 消化를 目標로 하여 그 作業能率의 增進을 圖謀함과 同時に 可及的 多角的으로 利用하고 그들의 有機的인 綜合統制를 期하여 一事一業에 偏重됨이 없도록 한다. 세째 計劃은 自給自足을 原則으로 하여 企業的 營利本位의 計劃에陷入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小作農增加의 防止, 農村經濟更生과 아울러 農村思想의 善導에 目的을 두고, 1932 年度에 實施를 보게 된 自作農地設定維持를 위한 計劃의 輪廓과 年度別 展開內容을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表 5〉 年度別 自作農家設定維持計劃

年 度	設定維持戶數	設 定 維 持 面 積		
		畠	田	計
1 9 3 2	2,085(戶)	887.31(町)	649.93(町)	1,527.24(町)
1 9 3 3	2,095	807.28	707.73	1,515.01
1 9 3 4	2,540	908.36	760.86	1,669.22
1 9 3 5	2,470	801.46	776.24	1,577.73
1 9 3 6	2,383	691.34	890.19	1,581.53
1 9 3 7	2,483	675.90	883.82	1,559.72
1 9 3 8	2,486	635.23	776.71	1,411.94
1 9 3 9	2,449	528.20	779.40	1,307.61
計	18,991	5,925.10	6,224.88	12,149.99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の農業』，1938，pp. 213-214。

위의 年度別 自作農家設定維持計劃表에서 計劃對象農家는 18,991戶이며 維持對象面積은 畠田 合하여 12,149町步에 達한 것으로 이는當時의 全體 純小作農家の 比率 및 小作地의 比率面에서 보면 極히 僅少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위의 農家更生計劃과 自作農家設定維持計劃의 目標設定 속에서 農村振興運動이 展開되고

있었던 것이나 그의 本格的인 時期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를 一層 促進하고 強化하여 效果的으로 運營기 위하여 그의 助成의인 施設을 講究하여 實施한 바 있었다. 助成의 施設이란 곧 農地令<sup>(15)</sup>의 發動에 따른 農村振興運動의 施行을 말하고 이 農地會의 實施를 通하여 小作慣行改善에 寄與되도록 하여 低利資金金融通에 依해서 農家高利負債의 償還整理를 하고 稅制를 整理하여 農村負擔을 輕減케 하여 低利資金金融通을 增加시켜 自作農地의 創定事業을 擴充하고 南棉北羊의 獎勵擴張을 企圖하여 多角的 邁正產業에 依한 收入增加를 圖謀하고 農村產業組織의 刺激發達을 目的으로 하여 小產業法人的 設置에 着手하여 米穀問題의 根本的 對策을 講究하여 米作의 安全을 圖謀하고 農業 및 林業의 協調, 合理的 經營을 促進하여 야 할 農用敷地의 設置斡旋을 企圖한 바 있었다.

農村振興運動의 助成의 施設로서의 農地令은 그의 立法趣旨 및 規定內容으로 보아서 一但은 朝鮮農政史上 劇期의 重要法令이라 할 수 있으나 農地令에 規定되어 있는 事項은 다음과 같은 6個事項<sup>(16)</sup>으로 大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첫째는 農地令의 適用範圍를 規定한 것으로서 第1條 및 第2條, 둘째 舍音其他의 小作地管理者에 關한 規定으로서 第3條 乃至 第5條, 세째 直接의 小作條件의 重要事項을 規定한 것으로서 第6條 乃至 第23條, 네째 府郡島小作委員會에 關한 規定으로서 第24條 乃至 第27條, 다섯째 裁判 및 裁判費用에 關한 規定으로서 第28條 乃至 第29條, 여섯째 制裁規定으로서 第30條 乃至 第31條.

모름지기 宇垣總督下에서 實施를 보게된 農村振興運動이 目的하는 內容 및 基本思想理念을 좀더 仔細히 살펴보고 整理하여 보면 宇垣總督이 農村振興運動 指導主任者打合會議에서 提示한 바 있는 「內鮮融和, 惡思想의 是正, 勞資의 協調 및 弊習의 打破, 經濟의 更生, 生活의 安定向上, 地方自治의 發達」<sup>(17)</sup>을 確立하여 하는 데 目標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宇垣總督時期의 核心의 政策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던 農村振興運動에 關한 몇가지 特徵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의 特徵은 春窮退治, 負債退治 및 負債豫防에 主眼을 두고 推進되는 運動이었다. 즉 農村振興運動의 直接的 名目은 農家經濟의 再建에 있었다. 많은 不幸한 農民들이 있다는 것은 朝鮮統治에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無視한 朝鮮의 開發은 絶

(15) 農地令이란 農民窮乏經濟下에서 農民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圖謀하며 地主・小作人의 協調融和의 精神下에 農事의 改良發達, 農家經濟의 進步를 期하며 나아가서 地主・小作人의 共存共榮의 實績을 舉揚하여 朝鮮農業의 發展과 農村平和의 維持改善을 目標로 한 朝鮮統治의 根本的 大方針에 根據를 두고 制定公布된 法令을 말한다.

(16) 吉用正廣, 『小作に關する基本法規の解説』, 朝鮮農政研究同志會, 1934, p. 5.

(17) 朝鮮總督府, 『農村振興運動指導主任者打合會議』, 1934, p. 17.

對 있을 수 없다는 判斷下에 內鮮融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農民을 救濟하는 것이 先決問題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當時 農村의 極에 達하였던 春窮과 負債를 退治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農家更生三目標를 振興運動의 主眼으로 하였다.

둘째 運動의 對象을 個個의 農民과 個個의 農家에 主眼을 두고 推進된 運動이었다. 즉 總督府에 모든 權力構造가 直接的으로 一戶一戶의 農家の 부역에까지 浸透하는 體制를樹立하여 推進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從來의 支配體制로서는 朝鮮人을 把握할 수 없다는 反省에서 그려하였다. 즉 從來 總督府의 方針은 道·郡을 通해 邑·面·里·洞에 傳達되는 組織體制이 있으므로 個人에게 充分한 傳達이 없었다는 總督府自身의 自覺에 立脚하여 振興運動過程에 個個의 農家와 個個의 農民을 對象으로 接近하는 方法을 採擇케 되었다.

세째 振興運動은 物心兩面의 運動에 主眼을 두고 推進된 運動이었다. 物心兩面이라고 하는 것은 更生한 農民은 單純하게 經濟的으로 更生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皇國農民으로 更生하여야 한다는 것에 主眼을 두는 것이었고 그에 있어서 指導重點은 精神開發에 두고 物質에 偏挾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위의 農村振興運動展開에 있어서 總督府가 提示한 基本思想이 무엇이며 어디에 根據를 두고 推進 展開된 바 있었던가.

### (1) 心田開發에 主眼을 둔 基本思想

日帝의 植民地政策이 內鮮融和에서 內鮮一體로 變化象徵되어 있는 内容에서와 같이 朝鮮이 없이는 日本의 侵略政策은 그 뿌리로부터 혼들리기 때문에 그를 克服함에 있어서 心田開發의 課題는 그들에 있어서 緊要하고도 切實한 對象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의 主眼은 부득이 心田開發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는 大陸侵略의 戰略基地로서의 半島의 役割을 順調롭게 進行시키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日本의 「東亞經輪의 政策은 當然히 朝鮮을 足場으로 그 中心地帶로 삼지 않으면 아니됨에 있다」<sup>(18)</sup>라는 内容에서 그의 真意를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더우기 日本은 朝鮮國內에서 默默히 평안 과연 農民들도 「滿洲事變 및 國際聯盟의 脫退 그리고 滿洲國의 成立이라고 하는 侵略의 展開를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sup>(19)</sup>라는 内容과 同時に 「關心 깊은 곳에는 日本의 失敗와 挫折을 渴求케 되었다」<sup>(20)</sup>는 内容 等等에서 그의 斷面을 充分히 찾아볼 수 있게 된다.

日帝가 農村振興運動에서 心田開發 및 精神作興에 重點을 두게 된 것은 언제 抵抗의 불

(18) 鎌田澤一郎, 『宇垣一成日記』, 水の書房, p. 346.

(19) 上揭書, p. 819.

(20) 上揭書, p. 820.

길에 휘말리지 모르는 朝鮮人の 心田을 天皇의 赤字로서 그리고 皇國臣民으로서 開發하여 나가려 함에 있다고 性格지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日本帝國의 一翼을 朝鮮人이 擔當하여야 한다고 認識시키는 것이 朝鮮人の 心田을 皇國臣民으로서 開發시킴에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前提條件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農村振興運動의 心田開發의 意中과 內容 그리고 性格은 宇垣總督이 指摘한 다음의 內容<sup>(21)</sup>에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즉

① 天皇制를 들어서 日本은 나라의 中心이 萬代不易不動으로 되어 있다. 서로 協力함으로써 이를 中心으로 더욱 더 確固히 끊치면 모든 것이 安全하다 하고 결국 日本은 다른 外國과 같이 政黨의 變動이 나라의 中心 즉 國體에까지 變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이야말로 日本이 世界의 으뜸이라는 것을 強調하고 이 萬代不易不動의 天皇을 모시는 皇民이 되는 것은 無上の 榮光이고 朝鮮民族은 그 최초의 榮光者이고 朝鮮이야말로 八紘一字의 第一步이어야 하며 따라서 朝鮮人이 自國을 認識한다는 것은 즉 天皇을 모신 日本의 國體를 認定하는 것이고 自己의 姿勢라는 것은 皇國臣民이라는 것을 自覺케 함에 있다.

② 第一次世界大戰以後에 戰勝國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있어서마저 莫大한 戰貨를 載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帝國에는 皆無하다. 그 위에 歐美諸國은 資本主義의 餘弊인 貧富顯隔으로 苦憊하고 있지만 日本이 資本主義에 말려든 것은 歐美諸國에 比하면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被害도 적고 그만큼 回收도 可能하게 된다.

## (2) 農本思想開發에 主眼을 둔 基本思想

農村振興運動의 思想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意中과 性格內容은 農本主義이었던 것이다. 宇垣<sup>(22)</sup>에 依하면 오늘의 朝鮮農村의 慘狀은 資本主義의 惡影響에 依한 것이고 이러한 惡影響을 막고 農村本來의 使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함이 農村振興運動의 커다란 意義라고 하고 따라서 農村振興에는 虛弱, 輕佻, 墮落的인 都市 或은 商工業과 對比해서 實質剛健한 農村의 生活이 눈에 돋보이게 보인다. 今井政務總監<sup>(23)</sup>은 人生의 真實된 幸福은 農村에 만 있다고 強調하고 마치 톨스토이의 田園描寫를 想起시킬 수 있는 農村의 新鮮한 空氣, 新鮮한 食糧 그리고 最高의 善이 合致하는 農業을 讀美하여 마지 않는다.

위의 內容에서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에서 農本思想開發을 標榜한 根據를 알게 되는 것이나 이는 곧 經濟恐慌의 餘波와 影響을 農本思想의 美名下에 精神的인 侧面에서 打開하

(21) 日本大藏省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第7章「教育文化政策と其實績」, p.29.

(22) 鎌田澤一郎,『宇垣一成日記』, 水の書房, p. 950.

(23) 山崎進吉,『農山漁村指導大講演』, p. 46.

려는 意中の 것이었음을 看過할 수 없게 된다.

더우기 日帝는 農村農民은 「健全한 國防의 役軍」<sup>(24)</sup>이라는 確信으로부터 健全한 農民이 必要하였다라는 그들의 率直한 告白에서 그 内容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農民이 健全한 身體와 精神을 갖출 때만이 人的 資源으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日帝下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의 意圖 및 目的是 農村振興運動에 理論的 指導者이 있던 山崎進吉이 農本主義와 天皇과의 不可分의 關係下에 있다는 다음과 같은 内容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즉 「國體인 農業, 天下의 大本인 農業과 우리들의 主權인 天皇과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유독 日本뿐이다. 거기에 日本의 萬國無比의 國體가 있게 된 것이고 이에 東洋精神文明의 基調인 重農主義와 農本精神을 더욱 더 깊이 結合시켜 그를 實質化케 함은 天皇에 대한 忠誠이다. 따라서 農을 亡하게 하는 것은 單純한 農業에 局限되는 問題가 아니고 國家가 永遠히 亡하는 것이고 農業을 振興시키고 同時に 農民 스스로가 農民의 道를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國家存廢의 關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國家의 運命을 걸고 農業振興을 圖謀하여야 한다.」<sup>(25)</sup>

#### IV. 農村振興運動의 結果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展開는 1930年代의 農業恐慌과 깊이 聯關을 갖고 推進된 것이 事實이고 이의 推進意圖는 農業恐慌에 따른 農村經濟窮乏化의 救濟手段이란 政策標榜에서 展開된 것이 뚜렷하나 內面的인 方面에서 內鮮一體, 皇國臣民化 等等 여러가지 目的의 設定에서 推進된 것이 事實이다.

이에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을 그들이 다음과 같은 内容으로 日帝自體가 評價 整理함으로써 그를 總合하려는 事實이 없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農村振興運動實施以後에 內鮮人間의 融和協同, 官民相互의 親和提携 等 統治上 歡迎되어야 할 機運이 一層 釀成됨과 同時に 一般民衆에 對한 勤勞精神의 振作, 生活의 改善, 消費節約, 國旗掲揚, 色服着用, 그리고 隣保共助精神의 합양과 더불어 納稅成績의 向上, 賒金增加, 農產物增收 및 各種犯罪 等의 減少에 寄與되는 바 적지않다」<sup>(26)</sup>와 同時に 「農村振興運動의 重要한 一環으로 推進된 農家更生計劃實施以後 食糧의 充實, 負債의 償還과 現金收支의 均衡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차차 그 實績을 거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農村民

(24) 鎌田澤一郎, 『宇垣一成日記』, 水の書房, p. 948.

(25) 山崎進吉, 『農山漁村指導大講演』, p. 47.

(26)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の農業』, 1939, p. 228.

衆生活의 安定 向上에 일말의 光明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內鮮人間의 融和協調, 官民相互의 親和提携 等等 統治上 希求되어야 할 機運이 一層 癟成되어지고 더우기 一般民衆의 勤勞精神의 振作, 生活改善, 消費節約, 國旗掲揚, 色服着用, 隣保相助 等等 美風良俗을 驟致하고 따라서 農產物의 増收 및 副業의 實行 等에 促求的인 手段이 되었다. 云云」<sup>(27)</sup>

위의 内容에서 農村振興運動에 대한 成果는 一但 살펴볼 수 있기는 하나 그의 成果인 즉 經濟更生三目標의 達成에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日帝 스스로가 意中한 바 內鮮一體 및 皇國臣民化에 있었다 함은 否定할 길이 없다.

더우기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에 따른 結果는 朝鮮小作調停令에 따른 施行마저도 地主의 反撥에 依해서 強力히 制動되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 할 수 있게 된다.

農村振興運動推進의 重要한 一環으로 施行을 보게 된 小作調停令이 地主의 反對運動에 부딛쳐 그의 實質化를 期할 수 없게 되었거니와當時에 그의 反對理由<sup>(28)</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朝鮮小作調停令의 制定은 朝鮮의 現狀에 비추어 時期尚早이어 絶對的으로 反對한다는前提下에서 朝鮮에 있어서 土地는 生產增加의 餘地 極히 큰 것이기는 하지만 一般農民은 知識程度가 낮고 經濟力 亦是 貧弱하므로 이를 開拓하기 위하여서는 地主를 善導하여 그들이 指導援助에 臨하게 하는以外에 별다른 方法이 없다. 現實的으로 朝鮮農業의 發達하는 實情을 보건대 官府의 施設의 適否如何에 달려 있음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한편 地主가 많은 懺牲을 支拂하여 小作人을 指導保護하고 그의 實質에 있어서는 共同經營形態에 있어서 農產의 改良增殖을 圖謀함에 依存되고 있다. 더우기 이들 地主의 活動에 依存케 되는 内容은 倍加의이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萬一 法令으로써 權利義務上에 兩者를 對立시킬 때에는 農村의 平和를 破壞케 하며 同時に 朝鮮農業進步의 方向을 制約하는條件이 된다는 事實에서 農村振興運動自體가 實質화를 期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의 成果와 結實에 대한 總合은 다음과 같은 内容面에서 整理하여 봄으로써 그를 把握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첫째 農村振興運動에 대한 成果檢討는 우선 農村振興運動의 推進에 있어서 主眼이 되어 있었고 同時に 核心的 課題가 되어 있었던 農家經濟更生三目標 즉 春窮退治와 借金退治 그리고 借金豫防이 어느 程度로 成果를 얻게 되고 結實을 얻게 되었음인가에 대한 内容과 實績與否를 살펴 봄으로써 그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27)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p. 678.

(28)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1935, pp. 43-44.

무엇보다도 農家更生三目標에 立脚한 更生計劃當時의 食糧不足農家戶數 31,581戶를 對象으로 하여 1年間에 거둔 食糧補完實績을 實績農家戶數와 比率面에서 보면 實績農家 6,939戶로서 20.2%에 不過하며 借金返濟의 計劃과 實績을 보면 計劃當時의 對象農家 43,327戶 가운데 實績農家戶數는 5,649戶에 不過하며 그의 比率이 13%에 그쳐 있었다는 內容에서更生目標達成을 위한 農村振興運動은 별다른 結實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具體化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表 6〉과 〈表 7〉 參照).

〈表 6〉 不足食糧補完實績

區分 項 目	戶 數	數 量	食糧不足農家戶當
計劃當時의 食糧不足	31,581戶	73,580石	2.22石
1年間食糧補完實績比	6,939戶	25,840石	0.82石
率	20.2%	30.5%	30.5%

資料：朝鮮總督府 渡邊農林局長，『自力更生彙報』(1933年度實施以後 第1次 農家更生計劃 1年間의 實績概要)，1934年 11月。

註：1年間 食糧補完戶數는 完全한 戶數만 記載하고 補充量에 있어서는 一部 補完된 것도 全部 掲載되어 있음。

〈表 7〉 負債農家退治實績

區分 項 目	戶 數	金 額	負債農家戶當
計劃當時의 負債	43,327戶	4,965,950圓	115圓
1年間負債償還實績比	5,649戶	1,063,317圓	25圓
率	13%	22%	22%

資料：入尋生男，『農家經濟更生讀本』，p. 34。

註：計劃實施 1年間의 負債償還戶數는 全部 債還된 것만 記錄하고 金額에 있어서는 一部 債還된 것도 合算되어 있음。

둘째 農村振興運動展開의 結果는 그의 對象이 된 農家の 規模가 어느 程度의 것이었으며 그것이 全朝鮮農家에서 占有하는 比率이 어느 程度의 것이며 同時に 그 對象農家는 朝鮮農家機構 안에서 어느 階層을 對象으로 하였음인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게 되나 農村振興運動의 推進에 依한 對象農家數의 限定性과 그의 僅少比率 그리고 그의 實踐上에서의 未備等으로 所期의 成果를 舉揚치 못하였다라는 侧面에서도 알 수 있게 된다.

「1933年과 1934年の 2個年을 通해서 指導部落數는 4,700部落, 更生計劃農家數는 約 12萬戶로 朝鮮總農家戶數의 33分之 1에 該當되는 것에 不過하였다.」<sup>(29)</sup> 「現實的으로 1933年과 1934年的 運動傾向에 대하여 보아도 運動對象은 指導의 容易한 方面에 集中하고 大衆性의 缺如에 相當한 效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利益의 惠擇을 받는 것은 特殊農家에 局限되

(29) 朝鮮總督府 渡邊農林局長，『於知事會議農村振興運動に關する演說要旨』，1935年 1月。

어 있는事實에 問題點이 있다.」<sup>(30)</sup>

세째 農村振興運動展開의 結果는 그의 主導的 役割의 一翼을 擔當한 바 있었던 農地令施行指標와 그의 施行後 小作爭議가 어느 程度로 解消 調整되었으며 農民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어느 程度로 保障되었음인가의 內容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의 功勞마저도 別로 認定할 수 없게 된다는 點에서 農村振興運動에 대한 性格과 本質을 알 수 있게 된다.

「農地令施行以前에 있어서의 小作爭議原因은 主로 小作料關係에 있었고 그 以後에 있어서는 主로 小作權 또는 小作地關係에 있었던 것이다. 즉 1927年~1932年間의 爭議에 있어서는 小作權 또는 小作地關係가 51.8%이었던 것인데 反하여 1933年~1939年間의 爭議에 있어서는 그것이 80.9%로 增加된 것이다. 反面 這間에 小作料關係 및 諸費用負擔關係 等을 內容으로 한 基本爭議는 48.2%로부터 19.1%로 減少된 것이다. 이것은 從來 地主에 依하여 마음대로 剝奪되던 小作人の 耕作權이 農地令施行으로 비로소 若干의 保護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意味함에 不過하다. 그러나 僅三年의 耕作權確保를 目的으로 한 1933年~1939年間의 激增된 爭議件數에 있어서도 要求貫徹은 60%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意味함인가. 農村振興運動展開의 重要한 一環으로 施行을 보게 된 農地令實施下에서도 온갖 口實下에 小作權의 移動은 依然히 恣行되어 있었다는 事實을 如實히 證佐하는 것이 되어 있어 이리하여 農地令은 그 自身 3年繼續小作이라는 唯一最高의 立法目的마저 스스로 廣範하게 蹤躡하고 말았던 것이 이로써 農村振興運動의 唯一한 社會立法의 功勞도 赤裸裸하게 暴露되고 만것이다. 云云」<sup>(31)</sup>

日帝下 小作爭議는 小作爭議運動의 歷史的 意義에 關한 研究結果<sup>(32)</sup>에서 指目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많은 社會經濟的 含蓄性<sup>(33)</sup>을 지니고 있었던 日帝下에서의 唯一한 爭議運動이었

(30) 上揭書.

(31) 金漢周,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第三部 農政史), 1947, pp. 168-169.

(32) 朱奉圭,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歷史的 意義에 關한 研究」,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東亞文化』, 14輯(1977), pp. 357-358.

(33) 社會經濟的 含蓄性은 다음과 같다. 첫째 小作爭議運動은 第一次 世界大戰以後 3.1民族運動에 連繫되고 後續된 農民을 母體로 한 民族運動이다. 그리하여 小作爭議運動은 3.1運動을 契機로當時 急激히 膨大된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思想意識의 一般的發展에 依한 必然的인 所產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곧 民族解放運動 및 民族的反帝運動으로 昇華된 性格의 것이다.

둘째 日帝下 小作爭議는 地主에 對한 小作條件改善을 위한 個別的 또는 分散的인 戰爭이 아니라 集團的 또는 大衆的 및 組織的인 強靭한 戰爭運動으로 展開된 性格의 것이다.

세째 小作爭議運動은 日帝下에 農民運動의 先驅者를 이루는 劃期的인 主體意識의 發達로 浮刻된 運動이고 民族運動의 發展的인 契機로 具體化된 性格의 것이다.

네째 日帝下 小作爭議는 近代的인 勞動運動과 깊이 聯關係를 가짐으로써 勞動爭議에 準한 性格의 것으로 階級的 對立抗爭運動의 實質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다섯째 小作爭議運動은 單純한 經濟爭議의 範圍를 벗어나서 思想的 民族的 戰爭과 結合되어 이룩된 運動으로서 近代的 社會思想運動의 性格을 지닌 것이다.

으나 小作爭議運動은 1930年以後의 經濟恐慌에 隨伴하여 農產物價의 下落과 많은 年數에 거듭하여 이룩된 痘弊에 聯關係된 負債의 累增的 增加에 따라서 小作爭議는 深刻한 社會經濟的 問題로 提起され 되었던 것이다.

이에 日帝는 1932年 12月 1日 制令 第五號로서 朝鮮小作調停令<sup>(34)</sup>을 公布하여 1933年 2月 1日부터 이를 施行함과 同時に 小作官의 增員을 行하고 각道에 이에 대한 設置를 期하였다. 그런데 이 小作調停令은 應急對策에 不過한 手結法以上의 範圍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小作制度의 弊害를一般的으로 續正하고 小作爭議를 未然에 防止함에 滿足된 手段이 되어 있지 못하여서 이에 實體法인 小作法制定을 期하여 弊害의 根源을 棘除하고 小作問題의 解決을 期한다는 目的下에서 朝鮮農地令을 立案하여 1934年 4月 1日 制令 第五號로서 이의 公布를 施行하여 1934年 10月 20일부터 實施를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은 1930年以後의 經濟恐慌餘波에 따른 農村經濟窮乏의 深化過程에서 社會經濟의 徵兆로서 나타나게 된 小作爭議問題를 解消하며 棘除함에 目的을 두고 施行을 보게 된 小作調停令 및 農地令의 法制約 裝置 속에서도 小作爭議運動이 오히려 더욱 激化一路에 있었다는 다음의 年度別 小作爭議發生件數內容에서 農村振興運動의 性格과 本質이 歷史的으로 어떻게 定立될 수 있음인가는 明若觀火하다 할 수 있게 된다.

〈表 8〉 年度別 小作爭議發生件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1 9 2 9	423	1 9 3 3	1,975
1 9 3 0	726	1 9 3 4	7,544
1 9 3 1	676	1 9 3 5	25,834
1 9 3 2	300	1 9 3 6	29,975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pp. 5-6.

네째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의 結果는 農民經濟窮乏의 救濟手段과 目的下에서 推進된 振興運動推進의 結果가 그의 解決指標로서 具體化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農民經濟窮乏의 極端的인 徵兆로서 火田民의 數爻가 反射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裏面에서 充分히 살

여섯째 小作爭議는 近代의 農村社會運動으로서 農民의 自律性에 立脚한 農民自主運動 및 農民福祉向上運動의 性格을 지닌 것이다.

(34) 小作調停令이란 小作問題紛糾로서 나타나게 된 小作爭議解決을 期하고자 하는 制度의 裝置의 一環을 말한다. 그런데 朝鮮에 있어서 小作調停令은 日本의 小作調停法과는 그의 趣旨와 内容을 달리한 것이며 그主된 差異點은 다음과 같다.

- ① 調停方法上의 差異
- ② 調停에 附設되는 事件範圍의 差異
- ③ 調停中立에 依한 訴訟手續範圍의 差異

펴볼 수 있게 된다.

1930年代의 日帝下 韓國農民經濟는 貧困의 深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니와 그것은 「小作階級의 農民은 1個年の 食糧을 維持할 만한 能力이 없었고 麥收穫前 혹은 7,8月頃에 이르러서는 食糧缺乏함으로써 地主로부터 食糧貸與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 秋收期에 있어서는 이를 舊債의 債還과 小作料를 納付하고 나면 殘餘分 全無하여 每年 食糧의 前貸를 反復하는 狀態에 있었다. 더우기 이를 地主로부터 貸付 받은 사람은 高利의 것인으로써 零細農은 더욱 더 窮乏化하여 있었다. 云云」<sup>(35)</sup>과 「食飯은 食粥으로 米穀은 雜穀으로 雜穀은 滿洲粟로 전락된 속에서 生活을 維持하며 그에 의하여 生活維持가 困難한 農民階層은 親戚故舊에 의존한 強制食客, 乞食 및 流離. 云云」<sup>(36)</sup>에서 農民窮乏화의 修狀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極端的인 農民窮乏은 마침내 農民離村現象으로 나타나 社會經濟問題로 露出되고 있었으며 이를 離村類型이 國內에서의 流浪, 滿洲 및 시베리아의 移住 그리고 日本渡航의 三類型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國內에서의 農民離村은 放浪的 農業勞動者가 되던가 혹은 都市에 集中하여 商工業勞動者로 되는 것이 一般的인 것이나 이들의 勞動者는 商工業發達이 充分치 못한 日帝의 經濟發展條件에서 이들을 商工業部門에서 收容吸收할만한 餘地가 稀薄하였기 때문에 農民離村은 都市에서의 健全한 就業機會獲得에 따라서 貸金勞動者로서 生計維持를 講究하지 못하고 火田民으로 轉落되는 가운데 生活維持를 期하여야 한다는 極端의 경우가 있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農民經濟窮乏화의 極端의 徵表로서의 火田民이 農村振興運動의 展開 속에서도 漸增趨勢에 있게 되어 있었다는 事實에서 農村振興運動의 更生三目標를 達成치 못하였다라는 結果로서 特徵지울 수 있게 된다(〈表 9〉 參照).

더우기 1933年 當時의 純火田民의 總體的 數爻에 聯關된 82,572戶에 대한 地域別 分布狀況을 살펴보면 〈表 10〉과 같다.

이 資料에서 農村振興運動의 更生三目標는 事實上 農民經濟生活의 深刻한 窮乏化에 對한 脫出口로서의 離農現象과 그의 極端의 徵表인 火田民으로의 轉落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그의 漸增現象을 넣고 있었다는 點에서 更生三目標와 깊은 聯關을 가진 農村振興運動이 별다른 成果없이 具體化될 수 밖에 없었다는 事實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日帝나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에 따른 性格과 結果의 一環은 이 運動의 展開期間 동안에 農民의 糧穀消費經濟가 가장 劣悪한 狀態에서 이룩되고 있었다는 局面에서 그를

(35) 全北道農會, 『全北の農業』, 1930, p. 150.

(36)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1935, p. 32.

〈表 9〉純火田民의 漸增趨勢

年 度	總 農 家 戶 數	火 田 民 戶 數	比 率(%)
1 9 2 7	2,781,348	29,131	1.0
1 9 2 8	2,799,188	33,269	1.2
1 9 2 9	2,813,277	34,332	1.2
1 9 3 0	2,869,957	37,514	1.3
1 9 3 1	2,881,689	41,212	1.4
1 9 3 2	2,931,088	60,497	2.1
1 9 3 3	3,009,855	82,572	2.8
1 9 3 4	3,013,104	81,287	2.7
1 9 3 5	3,006,489	76,472	2.5
1 9 3 6	3,059,503	74,727	2.4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の農業』，1938，pp. 206-207。

〈表 10〉純火田民의 地域別 分布狀況

道 別	戶 數	比 率(%)
京畿 道	528	0.63
忠清 北道	1,565	1.89
忠清 南道	100	0.12
全羅 北道	1,153	1.39
全羅 南道	97	0.11
慶尙 北道	2,540	3.07
慶尙 南道	—	—
平安 南道	6,582	7.98
平安 北道	17,266	20.92
江原 原道	22,022	26.68
咸鏡 南道	23,782	28.81
咸鏡 北道	2,622	3.18
全鮮	82,572	100.00

資料：『朝鮮農林會報』，第9卷 第1號，p. 125。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즉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에도 불구하고 特히 貧窮退治運動의 展開에도 불구하고 食糧糧穀에 대한 一人當 消費量이 農村振興運動以前의 狀態보다 더 劣勢的인 糧穀消費樣態를 빚게 되었다는 事實에서 農村振興運動에 대한 性格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米穀의 一人當 消費量水準이 農村振興運動의 推進期間인 1932年～1936年的 期間 동안에 0.4017石으로 最低의 消費水準에 達하게 되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 할 수 있게 된다.

〈表 11〉 朝鮮米消費量概態

年 度	生 產 量	指 數	輸 出 量	指 數	朝鮮內在住人口 1人當消費量
1912~16(平均)	12,303(千石)	100(%)	1,309(千石)	100(%)	0.7188(石)
1917~21( " )	14,101	115	2,443	187	0.6860
1922~26( " )	14,501	118	4,375	334	0.5871
1927~31( " )	15,798	127	6,616	505	0.4964
1932~36( " )	17,002	138	8,735	667	0.4017
1937	19,410	159	7,201	550	0.5679
1938	26,796	218	10,996	840	0.7031
1939	24,138	196	6,894	527	0.7761

資料：金漢周，『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1947，pp. 151~152.

## V. 総 合

첫째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은 農業恐慌에 대한 克服對策의 一環으로 推進을 보게 된 運動이 있으나 이는 1930年代의 世界恐慌으로 因한 日本自體의 影響을 韓國에 轉嫁시키면서 가장 繖密하고도 組織的側面에서 推進을 보게 된 運動이었다.

둘째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의 推進意圖는 農業恐慌에 따른 農村經濟窮乏化的 救濟手段 이란 政策標榜에서 展開된 것이 事實이나 그의 突極目的은 內鮮一體 및 皇國臣民化 等等을 具顯함에 있었다.

세째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은 1930年以後 急速度로 增加된 農民離村傾向, 小作爭議의 增大 그리고 負債農家の 繢出 等으로 말미암아 農民의 窮乏과 滅落에 따른 社會經濟的 現象이 深刻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그의 救濟手段으로 經濟更生計劃 및 自作農創定計劃을 署列하여 그를 克服하는 양하였지만 그의 實은 植民地收奪政策을 隱蔽하고 植民地民衆의 反抗을 防止하려 하는 徹底한 工作運動에 不過한 것이었다.

네째 日帝下의 農村振興運動은 그의 助成的 施設로서 朝鮮小作調停令 그리고 自作農創定法 및 農地令 等等의 制度的 裝置 속에서 그의 施行을 보게 되었던 것이 事實이고 아울러 그것들의 立法趣旨 및 規定內容으로 보아서 一但은 朝鮮農政史上 劇期的인 重要法令의 性格을 證明한 것도 事實이 있으나 大地主들의 猛烈한 反對 때문에 그의 施行이 如意롭지 못하게 되어 農村振興運動은 그의 實質化를 期할 수 없게 되었다.

다섯째 農村振興運動은 그의 推進展開에서 標榜한 貧農에 대한 不足食糧의 充實 및 負債 整理 그리고 現金收支均衡 等을 위한 目標達成은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內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農村振興運動의 推進展開에도 불구하고 糧穀消費經濟가 極度

로 낮은 水準에 이르게 되었다는 事實과 더불어 農民經濟窮乏의 極端的인 徵表인 火田民이  
反射的으로 漸增現象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事實 그리고 小作爭議發生이 漸減現象으로 나  
타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顯著化되고 있었다는 當時의 事態에서 뚜렷하다 하겠다.

### 參 考 文 獻

- [1]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7.
- [2] 金漢周,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第三部 農政史), 1947.
- [3] 李基洙,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第二部 經濟史), 1947.
- [4]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研究』, 1978.
- [5] 朝鮮總督府, 『朝鮮の經濟事情』, 1931.
- [6]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2.
- [7]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1938.
- [8]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8.
- [9]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の農業』, 1938.
- [10]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 [11] 朝鮮總督府 渡邊農林局長, 『農村振興運動に關する演說要旨』, 1935年 1月.
- [12]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1935.
- [13] 久間健一, 『朝鮮農政の課題』, 1943.
- [14] 吉田正廣, 『小作に關する基本法規の解説』, 朝鮮農政研究同志會, 1934.
- [15] 鎌田澤一郎, 『宇垣一成日記』, 水の書房.